2025년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상반기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5년 2월 24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가. 지원대상 : 공고마감일(25.3.10.) 기준 다음 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① (소 재 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소상공인
 - ② (지원연령)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에 의해 정의된 자* *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
 - · (우대사항)* 디지털 취약 업종(숙박·음식점업, 제조업, 수리·기타서비스업)
 - 디지털 취약 **연령**(만 50세 이상)
 - * 근거 : '2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단계별 추진전략, 중소기업벤처연구원
- 나. 자격요건 : 공고마감일(25.3.10.) 기준 이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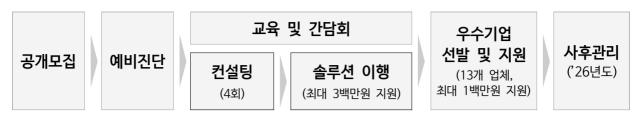
지 원 제 외

- 1)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지원제한업종을 영위중인 자(붙임1)
- 2) 휴·폐업 중인 자
- 3) '23~24년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 4) '25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비용지원 사업*을 받은(예정) 자
 - *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등
- 5)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중 영리사업자가 아닌 자(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다. 지원규모: 125명
- 라. 사업기간 : 선정일(3월) ~ '26년 상반기(사후관리)
- 마. 지원내용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역량 교육, 전문가 협업을 통한 컨설팅 및 비용지원

지원항목	내 용
교 육	디지털 역량 수준별 교육 제공 (기초교육/심화교육)
컨설팅	디지털 전환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최대 4회) 제공
비용지원	컨설팅에 따른 솔루션 이행 비용(실비) 최대 3백만원 지원
사후관리	지원 1년 후 기업 현황진단에 따른 정착지원 컨설팅(2회) 및 리마인드 교육 제공

2. 지원내용

가. 지원절차



중장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정착을 목표로 업체별 맞춤형 패키지 형태 지원

-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이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자 및 고객과의 거래활동과 생산 및 운영 등 기업 내부 활동에서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높이는 환경의 구축과정 * 출처: '2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단계별 추진전략, 중소기업벤처연구원
- 나. 컨설팅 절차



다. 컨설팅에 따른 솔루션 이행 항목

구 분	솔루션 이행 항목						
온라인 진출	•홈페이지·쇼핑몰 구축 •온라인 판매용 신제품 개발 비용 •온라인 판매용 패키지 디자인·제작	•상세페이지 제작 •오픈마켓·배달앱* 입점 수수료(최대 10만원) *서울시 공공배달앱에 한하여 지원					
온라인 마케팅	•로고 디자인 •온라인 홍보용 사진·영상 제작 •온라인 노출, 키워드 광고 •라이브커머스 방송						
디지털 환경구축	•원가관리, 인력관리, 재무·회계관리, 고객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사용 •온라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권, 상표권) 출원 및 등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테이블 오더·스마트 오더 기기 구매 및 선납 렌탈비용						

지원항목 관련 유의사항

- 1) 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백만원 이내 지원 (공급업체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교세자인 경우 결제금액의 90% 이내 지원
- 2) 이행 항목은 공급처 기준 최대 3개까지 신청 가능
- 3) 솔루션 이행비용 신청 기한 : ~2025년 7월 31일
- 4) (지원조건) 재단의 이행 항목 승인통지 이후 구매한 항목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솔루션 이행 완료 및 디지털 전환 교육(기초/심화) 수료 확인 후 지원
- 5) 위 항목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 지원 불가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5. 2. 24.(월) 10:00 ~ 3.10.(월) 17:00까지 (기한엄수)

나. 신청방법: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구 분	신 청 방 법
회원가입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 우측상단 '로그인' 클릭 - 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수)
신청서 제출	사업안내 메뉴 -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클릭 - 공고 확인 후 하단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제출' 클릭
신청내역 확인	로그인 - 우측상단 본인 이름(OOO 님)으로 마우스 커서 이동 - '마이페이지' 클릭 - '신청내역' 탭 클릭 - 신청내역 확인
신청서 수정	신청내역 페이지 - 사업분류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클릭 - 신청서 수정 후 하단 '수정하기' 클릭

다. 신청서류 :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

구 비 서 류	비고
①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②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온라인 접수화면 내 작성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 출력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⑥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생략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구비서류에 문서 열기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에 명시**하여 첨부(예시: 부가세 서류(비밀번호 12345678).pdf)

4. 평가·선정방법

가. 선정절차 : 2단계 평가(①서류심사 → ②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나. 평가방법

- ① (서류심사) 지원대상 확인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접수 또는 반려 처리(2배수 선발)
 - · 평가방법: **요건심사**(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검토) + **정량평가**(디지털 취약 업종·연령 여부)
-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순위 결정(①'24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받지 않은 자 ②대표자 연령이 높은 순)

② (평가위원회 심의) 내·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선발

· 평가방법: 정량평가 점수(1단계 서류심사 결과) + 정성평가(이래 평가항목 고려)

평가항목	점수	세부평가 내용
지원 동기 및 의지	15	· 대표자의 문제의식 및 디지털 전환 의지 · 지원사업 필요성
제품 역량	25	· 제품의 시장성· 차별성· 온라인 플랫폼 진출 가능성
사업 수행 역량	25	·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수행의지 및 역량 · 사업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15	· 지속가능성 · 성과창출 기대효과

5. 향후 일정

가. 선발결과 통지: 3월

나. 사업수행 시작: 3월

다. 교육, 경영진단 및 컨설팅 : 3월 ~ 6월

라. 비용지원 : 7월

마. 우수기업 선발: 10월 ~ 11월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공지 예정

6. 유의사항

- ①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지원신청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공고상 지원요건이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단계에서 반려처리 될 수 있습니다.
- ② 공고마감 이후 추가보완은 불가하며, 신청서류를 마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③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본 공고문을 숙지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연락불능 등의 경우 선정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 ⑤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⑥ 최종 선정과정에서 지원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브로커 등의 부당 개입 적발시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⑧ 문의 : ☎ 1577-6119 (서울신용보증재단), ☎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 붙 임 1. 지원 제한업종 1부.
 - 2.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3. 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 1부.

[붙임1] 지원제한업종

지원제한업종 |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
	- 다던게단매급. 다던, ' 응문단매등에 된단급률' 제2호제6호의 다던게 - 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신용보증재
	단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지원제한업종Ⅱ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도박 및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1 - 11 - 1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관련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건전 문화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관련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업 체 명							사입	a자등록!	번호			(□개인 □법인)
대 표 자						6	!락처(H	P)				
생년월일							개업일지	ŀ				
업 종						,	주요품독	1				
사업장주소							사	업장(TE	EL)			
		202	22년				202	23년			20)24년
매 출 액			백만원					백만	원			백만원
종업원수			명						명			명
순 수 입			현 재							희망	<u> </u>	
T 구 ㅂ	(월 ⁾	명균)				원		(월	평균)			원
점포입지	□아파트	트단지	□주택가		도로변		기타()		검포면적		m²
소유구분	□임차		□자가							기타수익		
디지털 역량 (본인이 생각하는)	□ 디지털 입문							□ 디지털	심:	화		
지원필요분야	□ 온라인	! 2출			□왼	라인 [개팅			□디지털	환경	구축
희망 교육 (택2)	□ Al 활	₹ [] SNS 활용		유튜브	활용	ା ଶ	活 촬영	□검	색 상위노출		스마트스토어 활용
오프라인 교육 참석 가능 요일	일	□화	ㅁ수]목	□₹	3	가능 시	간대	□ 오전		□ 오후
지원동기 및 의지												
사업 소개 (제품 강점)												

사업 수행역량					
기대효과					
선정 이후라도* 별첨서류 :1) 사업자등록증2) 최근 3개년 미	지원제외 사유가 사본 1부 출액 확인서류 : 확인서류 : 4대보	발견되면 (부가가치사 (홈택스 <u>!</u> 험 사업장	선정을 취소 네과세표준경 또는 세무서	· 부(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아니오 □ 액증명원
모든 서류를 빠?	집없이 제출하였	으며 필수	서류 누락	시 서류탈락으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신용보증	·재단 귀중				

[붙임3] 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

1.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u>www.seoulshinbo.co.kr</u>)의 메인페이지 하단 → 지점 안내을 통해 가까운 영업점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여 온라인 접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중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아래의 소상공인 조건(상시근로자 + 평균매출액)을 모두 충족하며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평 균 매 출 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에 해당					

3. 왜 지원대상이 '중장년'인가요?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 습득 용이성이 낮은 중장년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4. 공동사업자는 1명만 지원 가능한가요?

○ 네, 2명 이상의 공동 사업자의 경우 대표 1명만 지원 가능하며, 다른 사업자의 동의를 위해, 별도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5. 여러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1건만 지원 되나요?

- 네,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하면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만 사업신청 가능한가요?

○ 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7.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과 본인인증 수단(휴대폰 등)을 가지고, 사업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8. 개명하여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개명하신 이름으로 본인인증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핸드폰 본인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이용하고 계시는 통신사에 문의하시어 개명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의 : 본인인증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9. 사업에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디지털 전환 기초교육, 실습 교육, 전문가의 컨설팅(최대 4회), 컨설팅에 따른 솔루션 이행비용(실비 3백만원), 지원 1년 후 사후관리까지 밀착지원합니다.

10. 디지털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디지털 교육은 기초. 심화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기초) 소상공인아카데미(edu.seoulsbdc.or.kr) 온라인 교육신청 성장 디지털 전환 전용과정 아래 4개 과정 중 1개 과정 이상 **필수 이수**합니다.

	〔성장〕디	지털 전환 전용과정	
① 입문과정	② 오픈마켓 입점과정	③ 온라인 홍보과정	④ 배달 플랫폼 입점과정

- (심화) 수요에 따라 소통중심의 **오프라인 교육**이 개최됩니다. 심화교육은 1개 과목 이상 **필수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일정은 지원 합격 이후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11. 예비진단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에서 예비진단을 위한 현장 방문이 진행됩니다.
 - 영업점의 디지털 전환 총괄 관리자(PM, Project Manager)가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 환경 및 요구사항 파악 후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 업체의 특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인 '진단 컨설턴트'를 선정합니다.

12.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예비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컨설턴트를 매칭 후, 진단·처방 컨설팅(1회) → 지도 컨설팅(2회) → 이행점검 컨설팅(1회)로 진행됩니다.

13. 비용은 언제 어떻게 지급 되나요?

○ 전문가의 컨설팅에 따른 솔루션 이행 비용을 최대 3백만원까지 실비지원합니다. 대표님께서 재단의 승인을 받아 이행항목을 구매하신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재단에서 대표님 명의 은행 계좌로 이행비용을 지급해드립니다. 계좌이체 외 현금 직접 지급은 불가합니다.

14. 대표자 은행계좌로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타인계좌로 받을 수 없나요?

-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신청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요청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가능한 가족에 한하여, 증빙자료와 동의서류 작성 후 지급 가능합니다.

15.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무엇인가요?

○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 출력,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등이 내장된 무인 결제기를 말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50m^2$ 이상, 상시 100명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의 경우, '25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 편의 기능이 장착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5년 1월 28일 이전 설치 사업주는 '26년 월 28일부터 관련 의무 적용)

15. 신청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1.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 ①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② 전체메뉴 증명·등록·신청 메뉴 즉시발급증명 메뉴 '사업자등록증명' 클릭
- ③ 로그인 인증방식 선택하여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 로그인/생체인증/비회원 로그인)
- ④ 발급신청 기본인적사항과 신청내용, 수령방법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기] 클릭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방법

홈택스 발급	①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②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메뉴 - 즉시발급증명 메뉴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클릭
	③ 로그인 인증방식 선택하여 로그인
	④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⑤ 필수입력/선택사항 입력 후 [신청] 클릭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주민센터), 세무서, 병원, 마트, 전철역 등에 설치되어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 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
	①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정부24 발급 (공동인증서	② 자주찾는 검색창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검색 - [발급] 클릭
필요)	③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④ 사업자등록번호 및 필수입력사항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3.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방법

-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www,4insure,or,kr) 접속
- ② 사업장회원 로그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③ 상단 '증명서 발급' 메뉴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선택
- ④ 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안내사항 '확인' 선택
- ⑤ 사업장 가입자명부 체크 후 [신청] 클릭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17.10.17 개정)

중소기합기본법 시행당 제6소 제1당 관련(17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1 4 7 1 2
1. 국표점 제조법 2. 음료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3. 의록, 의록격세시다 및 도퍼세움 세모답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4. 기국, 기당 및 전을 제모답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Α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В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Н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l CJ4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